

特許登録出願・明細書作成要領

電子・電気部門

< I >



張 龍 植

< 辨理士・慶熙大教授 >

1 特許出願書

國家機關에 대하여 特許權의 賦與를 申請하는 것을 特許出願이라 한다. 特許出願은 書面主義에 의하되 口頭에 의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 특허출원에 具備하여야 할 書類는 다음과 같다.

1. 特許出願書(樣式 參照)

- ㄱ. 明 細 書
- ㄴ. 圖 面
- ㄷ. 同 意 書
- ㄹ. 讓渡證(樣式 參照)
- ㅁ. 國籍을 證明하는 書類(法人登記簿抄本)
- ㅂ. 委 任 狀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出願時에 具備되어야 하고 이중 하나라도 添付가 안되면 그 出願의 受理가 拒否된다.

2 特許出願書

特許出願書에는 發明의 名稱, 發明者와 出願人의 住所・姓名을 正確히 記載하여야 한다.

發明者는 眞正한 發明을 한者를 기재하여야 하며, 진정한 發明者가 아닌 자를 發明者로 기재한 때에는 後에 特許無効原因이 된다. 그러므로 會社技術部員이 發明한 것을 會社名義로 하거나 社長名義로 出願한 때는 반드시 發明者로부터 讓渡證을 받아 發明者로 表示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일단 出願한 후에는 發明者의 名義는 바꿀 수 없다. 發明者가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발명자의欄은「出願人和 같음」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 例 示 >

(특허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출원합니다)				
발명자 (고안자)	성명	정선달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영등포구 신길동 110~287		
출원인	성명	박문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성동구 신당동 15		
대리인	성명	이계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도동구 299-1		
발명(고안)의 명칭		××××의 가공처리방법		
외국인출원	최초출원	국명	일자	번호
	자국출원	국명	일자	번호
	우선권주장여부			
특허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출원합니다. 1976. 10. 18. 출원인(대리인) 이 계 동 ① 특허국장 귀하				
구비서류 ① 출원서 부분 1통 ② 명세서(정·부분) 각 1통 ③ 도면(정·부분) 각 1통 ④ 외국인 위임양도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각 1통				

출원인의 명의는 法律上의 명의를 기재하여야 하고 俗名이나 架空의 명의로 출원하면 그 權利는 空虛한 권리로 된다. 住所의 表記로 住民 登錄票의 기재대로 正確히 해야 한다. 特許 後에 特許權을 讓渡하거나 특허권을 行使하려 할 때

特許權者의 명이나 주소가 印鑑證明과 符合하지 않을 경우에는 權利行使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格別히 注意하여야 한다.

代理人欄은 辨理士에게 事件을 委任한 경우에 변리사가 記入한다.

7. 明 細 書

特許出願·實用新案登錄出願에는 반드시 明細書가 提出되어야 한다. 명세서는 특허출원에 있어서 主되는 書面이고 특허권의 効力範圍를 定하는 基礎가 되는 것이므로 출원하는 發明內容을 技術的으로 詳細히 表現하여야 한다. 명세서가 不完全하면 特許拒絕事由가 되고(特法 第82條) 特許된 명세가 實施不能의 不완전한 것일 때에는 특허무효의 原因이 된다(特法 第69條).

ㄴ. 圖 面

명세서에 記述된 發明의 內容을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圖面을 첨부해야 한다. 物件의 發明이나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그 物건의 構造가 重要하므로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方法의 發明에 있어서 특히 化學發明 명세서만으로 發明內容을 理解할 수 있을 때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意匠에 있어서는 도면만으로 권리가 認定되고 도면에 表示된 바에 따라 권리가 정해진다.

ㄷ. 同 意 書

2人以上이 共同으로 發明을 完成한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권리는 共有로 된다. 共同發明者中의 한 사람이 특허 받을 권리의 持分을 共同發明者 以外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特法 第54條). 따라서 出願人會社가 그 會社와 關係 없는 두 사람의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 받아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 경우 공동 발명자 중의 한 사람이 他人에게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反對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출원을 할 수 없고 다른 한 사람의 동의 없이 출원하면 특허받을 권리를 冒認한 것으로 되어 特許無効原因이 된다(特法 第69條).

ㄹ. 讓 渡 證

特許出願人이 발명자(考案者)가 아닐 때에는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 받고 그 讓渡證을 特許出願書에 첨부해야 한다. 이 양도증에 사용되는 讓渡人의 印章은 印鑑圖章이 아니라도 無妨하다. 그러나 한번 출원한 후에 出願

中인 발명을 양도할 때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때에는 讓渡證에 공동으로 署名하여야 하고 공동발명자 중의 한 사람이 自己持分의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할 때에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特法 第54條) 그 同意書를 特許出願書에 添付하여야 한다.

ㄱ. 國籍을 證明하는 書類(法人登錄簿抄本)

출원인이 個人인 경우에는 출원서에 住民登錄番號單을 기재함으로써 足하고 출원서에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출원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法人登錄簿騰本이나 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外國人이 출원할 때에는 이러한 서류는 國籍을 證明하는 書面으로 된다.

ㄴ. 委 任 狀

특허출원인은 반드시 변리사에게 위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변리사의 專門性에 期待하며 변리사로 하여금 特許出願節次를 代리하게 할 때에는 委任狀이 필요하다. 변리사는 위임장이 없이 타인의 특허출원절차를 대리할 수 없다.

② 特許明細書

1. 明細書의 意義

특허명세서는 발명내용을 公開하는 技術文獻인 同時 특허권의 効力이 미치는 範圍를 定하는 權利書로서의 役割을 한다. 특허가 技術公開의 代價로 부여되는 獨占의 實施權이므로 특허출원에는 必須的으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特法施行令 第1條). 새로운 기술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불완전하거나 혹은 實際上 實施不可能하여 産業上 利用할 수 없는 것일 때는 特許拒絕事由가 되고 특허되더라도 그 특허는 무효가 된다(特法 第69條).

특허권의 侵害라고 思料되는 模造品이 나타났을 때 모조품에 대하여 특허권의 効력이 미치느냐 못미치느냐의 判斷은 特許請求範圍의 기재에 의해서 判斷되고 아울러 특허명세서의 全體內容 發明의 상세한 설명이 補充的인 解釋基準이 된다. 이런 意味에서 특허명세서는 권리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계 속>